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하도록 「연구실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2026. 5.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연구실 사고 보험 제도 개선(안 제19조)”

1)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신체상”을 “정신상·신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 ----- -----.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u>신체상</u> 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1. ----- ----- ----- <u>정신상·신체상</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락처	(044) 202 - 4858